

산림소유와 去來의 自由化

李 在 石 한국양묘협회장

근래로서 산을 팔고 사는 일이 없어졌다. 이로인하여 사방 흘어져있는 산림이 합리적으로 경영되도록 일정한 단지로 사서 모으는 일이 잘 안되고 있다.

또한 국유림 관리는 국유림관리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세입이 급격히 줄면서 국유림 관리 운영상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유림의 경우도 거래가 거의 중단된 상태이므로 국유림 이상으로 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산림경영 단위가 되지도 않는 소규모 영세 산림소유자들이 산을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는 것이다. 원래 산림경영에서 대단위 집단 경영이 유리하다는 것은 임학통론에 나와 있는 이론이다. 때문에 산은 돈 있는 사람이 집단으로 산을 모아서 생산 구조조정을 통해 임업이 가능하도록 산림정책 당국이 배려해야 할 문제이다.

농발법에 의하여 경영규모가 되지 않는 영세농가가 처분하려고 하는 농토를 농어촌진흥공사가 매입 교환등을 통해 기업농을 육성하듯 임업도 이처럼 소유 또는 경영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팔려고 내놓은 산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원인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에 의하여 거래를 규제한데 있다.

우선 산림법에 따라 임야매매증명을 받

아야 한다. 그것도 말이 매매증명이지 사실은 매매허가나 마찬가지다.

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통작거리 20km 이내의 재촌(在村) 농산촌민이 아니면 산을 살수가 없게 되어있다. 뿐만아니라 기업의 경우는 산을 살수도 팔수도 없을 정도이다. 특히 임업이 주업이 아닌 기업은 비업무용 재산이라해서 기왕에 조림한 산도 처분을 강요당하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재촌농산촌민이 당국의 허가를 얻어서 산을 사면 될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농산촌에는 일년으로 수확이 가능한 농사를 지을 사람조차도 적다.

그런데 산림투자의 경우 1백년 농사이다. 이같은 농사를 지을 사람도 없고 더욱이 산을 살 돈도 없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 산림거래는 원천적으로 봉쇄된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같은 결과가 지속될 경우, 즉 전국 평균 2ha 내외의 산을 가진 2백만 영세산주가 경영도 되지 않는다고 산을 방치해 둘 때 여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먼저 리우 환경회의와 관련하여 앞으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목재자원조성에 큰 적신호가 된다. 뿐만아니라 향후 임업협동조합이 생기더라도 조합의 주인인 대다수

의 산주가 노는 산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할 때 주인 없는 조합이 되고 만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종합할 때,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여러 가지 법으로 산림거래를 규제한 조치는 소뿔을 뽑으려다 소죽이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부동산 투기억제는 부동산 투기를 막도록 한 여러 가지 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어 이것으로서 투기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즉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등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 것이다. 산림이란 원래 시장성이 취약하다. 그런데도 산림거래에 대하여 세법 외의 각종 거래 규제를 해놓은 것은 전국토의 65%가 넘는 산림을 생산은 하지 않고 자자손손이 상속만 되도록 빨을 묶어 놓은 셈이다. 산림도 재산이다. 처분해서 유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조림한 산이 제값을 받고 팔리고 사져야 산림투자를 할 사람이 나올텐데 그렇지가 못하니 산림의 민자유치는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산림을 대단위로 경영할려고 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는 거래의 편의제공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세계상의 혜택을 주어 장려해야 할 형편이다. 그래서 당면한 산림정책의 주요 과제가 산림의 소유구조 개선이든 경영구조 개선이든 간에 임업의 구

조조정 없이 한국임업의 장래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 구조조정의 열쇠는 임지 소유와 거래의 자유화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당국은 손을 써야 될 줄 믿는다.

지난번 어느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자가 들고 나온 정견 중 산업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지소유와 거래에 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자유화 한다는 정견을 제시한 것을 본바 있다.

이에 대하여 농업에 뜻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농지규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유화 할 것을 희망했다.

임지도 농지와 마찬가지다. 농업구조 조정을 통해 기업농을 육성하듯 임업도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림을 육성해야 한다. 세상에 날때부터 농민과 임업인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교통이 발달되어 전국이 일일 경제권에 들어있어 통작거리니 재촌 농민이니 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농업과 임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지 및 임지의 소유와 거래의 자유화를 재삼 촉구한다.

과소비는 졸부들의 행패 20년전 나를 생각해라